

#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

농림부



## 1. 개정이유

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'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'로 변경하고, 거출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축산단체가 이중으로 거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대의원의 결원시 보궐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,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법의 제명 변경

- (1) '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'이라는 제명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.
- (2)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'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'로 제명을 변경함.
- (3)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이라는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# 나.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(안 제6조제1항)

- (1)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

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의 성격이 모호하여 축산업자가 거출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됨.

- (2)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,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도록 함.
- (3) 축산단체가 이중으로 자금을 거출할 수 없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# 다. 대의원회의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 신설)

- (1) 축산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- (2)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,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- (3) 대의원의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, 대의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대의원회의 역할 명시(안 제9조제4항 신설)  
 (1) 대의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 있음.

(2)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, 의무거출금의 금액, 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으로 정함. 

## [참조]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### <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>

#### 1. 제안이유

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(2006. 12. 28, 법률 제8107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 조정(안 제2조)

- (1)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육우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신설하고, 생산자 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- (2)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100명으로 신설하고, 젖소는 150명에서 100명,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, 육계·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조정함.
- (3)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정함으로써 의무자조금 구성에 필수적인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하향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이 기대됨.

### <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>

#### 1. 제안이유

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(2006. 12. 28, 법률 제8107호)됨에 따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·군수 등의 보고사항을 조정하고 수납기관 수수료 및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해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·군수 등의 보고사항 조정(안 제6조)

- (1)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별도의 축산통계 조사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보고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조사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(2)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족사육두수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의무를 폐지하여 보고의무로 조정하고 보고사항에서 사육기간을 제외함.
- (3)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.

#### 나. 수납기관 수수료 상향조정(안 제9조)

- (1) 수납기관(도축장 등)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높여 수납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(2)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거출금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(현행 : 거출금의 100분의 30이내).
- (3) 수납기관의 성실한 자조금 징수와 새로운 수납기관의 참여를 촉진하여 자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#### 다.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 연장(안 제10조 제3항)

- (1) 의무거출금 납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축두수 등의 자료가 매달 5일 경에 자조금사무국에 통보되고 있어 매달 10일까지 거출금납입고지서의 발급 및 거출금 납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.
- (2)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함(현행 : 매달 10일까지).
- (3) 거출금 납입과 관련한 자조금 사무국과 수납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.